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핵심 과제

The meaning and the essential task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익섭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지난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의 숙원이자 인류 공동체의 희망인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한국 장애인 운동의 꿈이 실현되었다. 여기서는 국제 인권 조약에 있어 8번째로 기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그 시사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 문제를 해결해 나갈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인식하고 이로 부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권리협약 합의 과정에 나타난 대립된 입장들을 살펴 봄으로써 협약 채택 이전에 가려져 있는 갈등의 요소를 기억하고자 한다. 동시에 협약의 핵심 과제들을 살펴 보고 국내 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금번 권리협약이 한국 장애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게되는 미래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이 논의될 것이다.

1. 서론

지난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의 숙원이자 인류 공동체의 희망인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장애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선언적 접근을 종식시키고 인권을 통해 구속력 있는 장애인 국제 조약을 만든다는 원대한 꿈은 현실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한국 장애인 운동의 꿈이 실현되었다. 국·내외를 막

론하고 역사를 만드는 것은 위대한 비전과 헌신적 도전이라는 교훈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4반세기 역시 우리들의 새로운 비전과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국제 인권 조약에 있어 8번째로 기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그 시사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 문제를 해결해 나갈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인식하고 이로 부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권리협약 합의 과정에 나타난 대립된 입장들을 살펴 봄으로써 협약 채택 이전에

가려져 있는 갈등의 요소를 기억하고자 한다. 동시에 협약의 핵심 과제들을 살펴 보고 국내 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금번 권리협약이 한국 장애인에게 전반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게 되는 미래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이 논의될 것이다.

2. 장애인 인권의 역사적 의미

일반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일반 인권의 확대 적용으로 축소하여 이해되기 쉽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구축한 인권을 다양한 집단에게 적용해 가면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 역시 그러한 확대 적용의 한 예이라고 보는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 인권을 보완적이고 추가적인 발전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다. 지난 12월 13일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쉽게 설명되는 듯하다. 즉 1948년에 천명된 인권선언을 필두로 하는 7대 인권규약 및 조약들 이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마지막 영역으로 장애인의 인권협약이 다루어진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시점에 놓이는 일이 그 의미에서조차 최후나 최소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항상 선결 과제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의미의 중요성이 진행상의 순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사회가 그만큼 신속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사명감을 스스로 느끼고 주도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은 정치적 타협과 경제적인 계산이 반영된 결과물이며 국가간의 이익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은 특수 집단의 인권이면서도 세계 보편적 인권의 필요성을 정당화 하는 지시적 경험이며 인권의 보편성에 도전하는 인간적 고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곧 장애는 특수한 경험이지만 인권의 완성을 위해 인류에게 던져진 본질적 질문이며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대변하는 기준인 것이다. 인권을 경험에 근거한 담론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장애는 그 어느 집단보다 절실한 우선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상이다. 장애는 인권을 비취주는 역사의 거울 즉 인권 거울이며 여기에 비친 우리의 인권 얼굴은 새로운 변화를 결심하기에 지나치리만큼 충분한 역사적 증거이다.

1971년 유엔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을 채택함으로써 장애와 인권을 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으나 1982년에 제시된 유엔장애인10년의 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은 장애 예방과 재활이라는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의료모형(medical model)으로 선회함으로써 역사적 도약의 기회를 지연시켰다. 다시 한번 인권의 현 모습을 비

춰줄 수 있는 거울을 회피했다고 할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인권 문제를 사회 전면에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약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이를 위해 결집한 장애인 당사자 조직으로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mational : DPI)이 결성되고 국제사회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기억할만한 전기라고 하겠다.

이제 국제사회는 장애와 인권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고 장애인의인권을 인류의 약속의 차원으로 승격시키려 하고 있다. 장애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함축하고 있으며 전 생애에 걸친 과제와 더불어 사회적 환경 조건의 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을 인류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가 인권의 역사적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노력은 장애를 우선 과제로 설정함이 마땅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권의 완성을 위해 장애가 인권 역사의 마지막 마침표로서의 도구가 되는 일이다.

3.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배경에 나타난 대립된 생각들

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 특별위원회가 5년에 걸친 토론 끝에 얻어낸 합의의 결과이다. 그 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이

하나의 조약으로 성안되기 위해서는 논쟁과 협상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정치적 타협도 수반되었다. 다시 한 번 장애가 갖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 나타난 대립된 입장을 살펴보는 일은 국내 장애인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하겠다. 나아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설계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다.

1) 차별금지와 사회개발: 유럽연합(EU)과 타 지역의 대립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방향에 대한 두 가지의 접근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차별금지를 협약의 기본 성격으로 설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안과 사회개발을 강조하는 기타 지역의 안이 회의 초반부터 대립되어 긴장된 토론이 이어졌던 것이다.

유럽연합(EU)이 견지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은 첫째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역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협약의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새로운 권리(New Rights)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협약 역시 동등한 권리의 회복을 적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보완하

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은 권리협약에 삽입될 수 없고 만일 그렇게 되면 많은 수의 새로운 권리가 되어 논란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협약은 다만 모든 인간의 권리의 회복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EU)의 주장이다. 둘째, 이러한 권리회복의 핵심은 자연 차별금지가 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인권이 장애인에게도 구현될 수 있도록 협약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국가들은 협약이 추구하는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차별금지를 근간으로 구성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개발 모형을 강조하는 방콕 초안과 기타 비정부 단체의 안은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협약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변하고 있는 당사자단체들은 유럽연합(EU)의 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장애인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협약의 내용을 옹호하였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연합(EU)의 의견은 원리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지난 수 세기를 통한 장애인의 경험이 말하고 있고 유엔 인권 보고서 역시 지구촌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인권 조약에 의해서는 보장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역시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에게는 일반 비장애인과 다른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유럽연합(EU)에 반대하는 의견의 입장은 수화를 언어로 보장받을 권리나 접근성의 권리 그리고 다양성과 자립 및 사회통합과 같은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협약의 조항은 물론 원칙도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개발 모형은 세부적인 국가 개입을 적시하려 노력하는 반면 차별금지 모형은 원칙적이고 보다 간명한 형태를 강조하면서 회의 전반에 걸쳐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2) 장애인당사자단체와 정부의 대립

특별 위원회를 통해 나타난 또 다른 관점과 그 대립 양상은 장애인 당사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NGO와 각국의 정부 대표 간에 발생한 미묘한 의견 차이라고 하겠다.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협약의 성안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이번 회의가 NGO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상황을 강조하며 그 주장의 강도를 낮추지 않았다.

장애인 당사자단체는 전 회의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을 증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협약의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몇몇 참가자들의 견해를 견제하는 역할도 겸하였다. 전반적으로 많은 참가자들을 감동시키는 결

과를 가져왔음이 사실이며 일정 부분 이를 통해 초안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제도의 보장에 대한 의견이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관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역시 정부 대표로서 이들은 당사자 단체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자국 내에서의 실행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기할 만한 당사자단체의 주장으로는 세계정신장애인협회의 탈시설화 및 강제입소와 퇴소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에 관한 주장을 들 수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시설수용과 강제 입소 등은 장애인의 기본권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항이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분야임에 틀림없다. 기타 장애인 단체 역시 시설의 완전 폐지를 명문화 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저개발국의 저항에 부딪쳐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현재의 시설의 활용이 없이는 장애인에 대한 갑작스런 변화에 대처할 재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제농인협회 역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수화의 언어로서의 보장과 다양성의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장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을 감동시켰다. 특히 수화보다 구화를 선호하는 주류사회의 횡포를 거부하고 수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다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권리와 합치되는 의미있는 주장이

며 이의 협약에의 적시 여부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쟁점이었다. 예를 들어 수화가 언어로 보장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복지방송이라 명명되는 수화방송은 복지의 수준으로 평가되기 보다 인권의 지표로 평가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개발국과 개도국의 대립

회의에 나타났던 의견의 차이로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견제와 대립이었다. 특히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후진국의 견해에 대해 선진국들은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도국들의 입장은 향후 장애인정책에 관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명문화함이 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개발국들은 이를 국제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도국들의 상투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듯하였다. 즉 개도국들은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의 자국의 의무를 회피하고 이를 국제협력의 당위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 역시 유럽연합(EU)국들이었으나 다수의 국가와 NGO 등의 열화와 같은 저항으로 인해 결국 국제협력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장애인 관련 지식과 기술의 교류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국제사회의 특성은 향후 주의해야할 점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음성프로그램의 개발

과 상호 협력은 지구촌 시각장애인의 인권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가 모든 장애 영역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협력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의존적인 도구화로 전락하여 자국 내에서의 1차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려는 핑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핵심 과제와 국내법의 적용

1) 장애의 정의

금번 협약에 담겨 있는 장애의 정의를 이해함에 있어 우리는 그 정의가 제1조 목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매우 간명하게 그리고 “장애”가 아닌 “장애인”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의 법적 정의는 그 나라의 정책 대상과 예산에 직결되는 기본 요제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듯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체결 과정 역시 많은 이해의 대립과 갈등의 핵심으로 상존해 왔다. 몇 차례 장애의 정의를 논의한 바 있었으나 한번도 그 초안 조차 합의한 바가 없다 할 정도로 난제로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 8차 회의 말미에 결론을 얻을 정도로 진통 양상을 보여 주었다.

유엔에 의해 채택된 인권조약은 모두 7개이다. 즉,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이들 중 앞의 2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 반면 이후의 5개는 각각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여성, 아동, 인종, 이주노동자 그리고 고문 피해자 등이 구체적인 대상이다. 이들 중 여성과 아동 그리고 인종은 생물학적 혹은 인구 사회학적 정의를 통해 그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와 고문 피해자 역시 경제사회학적 혹은 정치적 관점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반면, 장애는 그렇지 않다. 의학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다르며 국가마다 정책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법에서 그러하듯 국제법에서도 장애의 정의는 그 대상 범위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법적 효력의 범위가 변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 그 지렛대의 양 극은 의료적 모형과 사회적 모형으로 대비되는 두 개의 관점으로 대별되어 있다고 하겠다. 오늘 날 일반적으로 의료적 모형에 입각한 장애의 정의보다 사회적 모형에 근거한 장애의 정의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자를 최소주의라 치칭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를 이상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금번 권리협약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현상은 최소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대표들과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비정부 조직들 간의 이해의 대립이다. 즉, 많은 정부 대표들이 자국 내의 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장애의 정의를 두지 말자는 완전 개별 국가주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피상적인 수준에서 명시하지는 요식주의를 고수한 반면 비정부 대표들은 최근에 인정 받고 있는 사회적 모형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반영하지는 이상주의적 입장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이해의 대립은 이론적인 관점에서의 대립이라기 보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현실적 및 정치적 입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최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 대표들 대다수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형이 초래한 국내의 경제적 비용을 사회의 부정적 부담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비정부 대표들은 장애인의 인권 회복이라는 필수적인 의무수행을 위한 협약의 정신을 당사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종 합의의 권한은 정부대표에 의한 합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상주의적 관점이 반영되기는 처음 부터 불가능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일부 정부 대표들이 미래 지향적인 장애의 정의 곧 사회적 모형에 입각한 장애의 정의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대다수 다른 정부 대표의 반대 입장에 의해 저지되었다. 최종 마감 시간 마지막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개별 국가의 권한에 위임하는 개별주의적 입장에서 한 걸음 발전하여

사회적 모형의 일부를 반영한 요식적 정의가 최종 합의되었다.

장애의 요식적 정의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와 같은 고정적 입장을 회피하고 “다음에 포함한다”와 같은 개방형을 택함으로써 사실상 장애에 대한 정의를 포기했으며 이로써 대립적 요소를 최소화하려 하였다. 또한 이 내용을 제2조 정의에 포함시키기 보다 제1조 목적에 뭉으로써 장애의 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논쟁점들을 피하는 전략적 합의라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의는

“장애인은 장기적인 손상(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과 여러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가 제한된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손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언급되어 있어 사회적 모형을 일정 수준 대변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참여를 장애의 지표로 보고 있다. 즉, 사회 환경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순수한 손상만을 장애로 보지 않고 사회참여가 어려운 현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향후 한국의 장애의 판정 기준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수준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적 진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장애 정의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손상이라는 기준은 장애의 정의에 있어

최우선의 선결 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상의 지표는 의학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상존한다. 이 점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지표는 이른바 필요조건이 될수는 있지만 상호작용조건과 충분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장애는 당사자가 처한 장벽과의 함수관계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즉, 장애는 처한 상황에 따라 유손상-무장애, 경손상-중장애, 그리고 중손상-경장애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상황에 대한 진단은 당사자의 진술과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 상황이 직업이면 직업 관련 전문가, 학교면 교육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나 생활 전반이면 이에 상응하는 전문가가 그 정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평가 전문가 양성 기준도 준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지표는 실질적인 사회적 참여이며 이는 손상과 장벽의 개별요소와 상호작용 요소 그리고 개인적 요소 등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장애 정책을 위한 평가 지표는 사회참여 수준이며 그 평가 기준은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적 권한(legal capacity)

장애인의 법적권한은 장애인의 권리 중 핵심적 과제이다.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장애인의 경우 발생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대한 권리회복 운동은 다양한 장애인운동의 내용이 되어왔다. 하지만 금치산

자, 혹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법적권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뜨거운 감자로 회의 종반까지 남아 있었다.

즉, 법적 권한(legal capacity)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국가간의 입장 차가 심각했다. 중국과 아프리카 및 아랍을 중심으로 하는 상당 수의 정부가 법적 권한을 행위가 아닌 자격으로 제한하는 각주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IDC와 EU 등은 이의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최종 회의가 열린 12월 5일 까지도 그 합의가 불투명했으나 극적으로 각주 삭제에 합의하면서 법적 권한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게 되었다.

법적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장하자는 의견과 평등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은 처음 부터 대립되어 나타났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의장 안에 따르면 법적권한을 가능한 최대로(to the extent possible) 보장한다고 함으로써 일정수준 제한하려는 입장을 반영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장애인단체총연합회(IDC)와 EU를 중심으로 한 당사국들은 법적권한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평등한 수준으로 보장됨이 협약의 정신에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기 표현의 삭제를 주장했으며 그 결과가 표현 역시 삭제되었다.

이에 더하여 IDC등은 법적 권한의 행사(Legal Capacity to Act)를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명목적 보장을 넘어 그 행사의 실현을 담보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반

영하는 것이다.

금번조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법적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support)의 범위와 그 성격이다. 장애인은 경우에 따라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권한의 행사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 장치가 필요하지만 왕왕 그 지원 장치가 법적권한을 대리하거나 대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언급이 필요했다. 이에 대하여 IDC와 많은 당사국들이 그 지원의 성격을 보다 객관적이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했으며 4항에서 그 안전 장치(safeguards)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국내 법 적용에 있어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번 조항은 우선 금치산자와 한정 치산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 각종 법적 권한의 제한을 두고 있는 국내 법의 조항과의 충돌로 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동등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인의 권한 제한 조항들을 개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연관되는 법적 및 제도적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후견인 제도 등의 논의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장치(safeguards)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의 유지를 위한 장치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도

검토해야 하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성과 지표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odation)과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보장에 있어 핵심적이고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금번 협약에 제시된 대부분의 조항들이 기존의 권리조약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를 장애인에게 보다 강화된 형태로 적용한다는 확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어 그 고유한 성격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를 살펴 보면:

제 5 조 - 평등과 차별금지

1. 당사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법 안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에서 명시하는 보호와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모든 차원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도를 통해 보호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평등을 고양하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정당한 처우가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향상시키거나 달성시키는데 필수적인 특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본 협약은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이 평등과 차별금지의 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재가 차별이나 하나의 쟁점은 즉각적인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쟁점이다. 즉,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을 차별적 상황으로 해석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번조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차별금지의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말하자면 이것은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와 같이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시민권으로서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되고 이러한 차별은 즉각적인 시정이 요청되는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거의 전 생활에 걸쳐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지만 특별히 자유와 안전, 교육, 그리고 노동과 같은 부문에서의 그것은 결정적인 요소이기에 금번 협약에서 이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차별로 규정되는지의 여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금번 협약의 제2조 정의를 보면 차별이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점진적 실현의 대상이 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가 즉각적인 실현의 대상이 아니라 명목적이거나 의도적인 지연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도 차별로 규정되어 있고 차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즉각적인 실현의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지난 3월 6일 제정된 국내 차별금지법에서도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킨 점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에 있어 기회와 위기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즉 정당한 편의제공 혹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도 차별로 인정될 경우 국내 다양한 제도에서 시정 요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교육 기관은 물론 직장과 공공 시설 등에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편의제공 거부 사례가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차별의 과제로 급 부상하게 되어 이의 시정을 둘러싼 논의가 증가할 것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이 사회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되면 그 정당성이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천 과제의 난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점진적 실현의 원칙(progressive realizatio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며 이의 비준 이후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실천의 의무를 갖는다. 협약의 실질적인 실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문은 협약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즉각적인 의무상의 효력을 갖는가이다. 예를들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 고용, 건강, 재활, 사회보장, 또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과 같이 자원의 활성화가 절대적인 영역에서 협약이 언급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가 비준과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우선 협약이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점진적 실현이다. 일반적 의무를 적시하고 있는 제4조에서 이러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금번 조항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당사국들의 정책적, 입법적, 행정적, 기타 관련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내용으로는 당사국들이 협약 적용과정이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이라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현실은 상당부분 시급한 조치와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 실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의 원칙인 점진적 실현이 장애인권리협약 적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부득이하게 명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권, 즉 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즉각적인 실천(Immediate Realization)을 함의하고 있고 따라서 장애인 권리협약의 내용 중 자유권에 관한 사항들에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실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차별적 행위에 관한 시정에 있어서는 권리의 즉각적인 실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에 의한 고의적이고 무책임한 실현의 연장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지 않는 경우 금번 협약은 그 실질적인 구속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영역에서 조차 당사국들이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협약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명시도 불가피 했으며 그 내용이 제4조 2항에 나타나 있다. 즉, 장애인의 사회권을 실현함에 있어 점진적 원칙을 전제로 하되 가능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원의 최대한 활용(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즉각적인 국제법 적용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고의적 회피를 금하고 있다.

점진적 실현의 원칙은 금번 협약의 장애인 관련 국내법 적용에 적지 않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러한 원칙은 협약의 국내 기준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대개의 회원국들이 그러하듯 한국 역시 협약 실천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즉각적인 실현을 의무화하기 보다 점진적인 실현을 일반원칙으로 명시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할 것이지만 장애인의 사회권 실현이 갖는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사회권 중에서도 교육과 같은 영역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평등권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사회권 실현에 대한 “즉각 점진” 원칙론의 답론은 많은 대립의 요소를 안고 있고 그 결과 국내법의 적용 역시 상당한 갈등을 보이게 될 것이다.

5) 장애 여성의 권리

6조인 장애여성 조항은 한국이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조항을 제시한 이후 마지막 8차에 이르기 까지 그 합의가 불투명했을 정도로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장애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차별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해결을 위한 접근 중 별도조항의 필요성에 관한 찬반이 엇갈렸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과 EU간의 대립이 가장 심각했는데 EU를 중심으로 한 반론의 핵심은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장애여성의 별도조항은 협약이 추구해야 할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여성과 같은 별도의 집단에 따라 조항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원주민 장애인 등의 각각의 조항이 필요하여 협약의 간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셋째, 오히려 장애여성을 강조

할 경우 다른 집단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넷째, 별도조항의 설치에 장애여성의 다양한 문제를 당해 조항의 국한된 사항으로만 축소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기타 여성차별금지협약(CEDAW)과 같은 협약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첫째, 보편성은 유지되어야 하나 권리협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의 실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특별언급은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장애조항과 CEDAW 14조에서의 농촌여성 조항과 같이 전례가 없지 않다. 둘째, 권리협약의 실행에 있어 여성에 관한 보편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CEDAW 조약이 필요했듯이 장애인권리협약 내에서 장애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장애 여성 조항은 정당하다. 셋째, 성은 단순히 하위집단이 아니라 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 영역에 적용되는 포괄적 차원이다. 넷째, 장애여성의 권리 조항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성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장애여성에게는 성 착취, 폭력, 학대, 출산권, 양육 등의 특별한 요구가 있고 게다가 현존하는 불평등을 감안할 때, 교육 및 고용 등에 접근하는데 있어 별도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차 및 8차에 걸쳐 열린 특별 위원회는 6조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절충과정을 거쳤다. 대략 3가지 절충안을 중심으로 대립과 절충,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겠다. 첫째는 Stand-Alone Approach로서 장애

여성관련 내용을 총 망라하여 하나의 조항 속에 담자는 전략이었다. 둘째는 Twin Track Approach였는데 이는 별도조항에는 핵심원칙, 즉 간략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세부사항들은 관련조항에 포함시키자는 전략이었다. 셋째의 전략은 Main-Streaming Approach로서 별도조항을 두지 않고 전문과 일반적 의무 및 관련조항에 걸쳐 장애 여성 관련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

한국은 Stand-Alone Approach를 지지하고 있으면서 Twin Track Approach로의 협상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에 임한 반면 EU등은 Main-Streaming Approach를 지지하면서 Twin Track Approach의 협상가능성을 일정부분 열어놓는 전략으로 임했다. 합의 도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IDC가 Twin Track Approach를 지지함으로써 한국이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최종 합의는 한국의 전략이 사실상 지향했던 Twin Track Approach에서 이루어졌다. 6조 토의에 들어간 특별위원회는 예상 밖의 지지 발언이 예멘과 같은 아랍권 국가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안의 절대적 승리 그리고 EU의 패배라는 감동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다.

한 가지 반듯이 포함하고자 했으나 그 달성의 목전에서 저지된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개념은 결국 협약의 뒤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장애 여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는데에는 성공했다고 하겠으나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됨에 따라 이 조항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간을

상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로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향후 장애 여성에 대한 별도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유엔 보고서 제출시 별도의 항목을 두어 작성하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에 관한 국내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정책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 조항을 별도로 설치할 당위성이 생겼으며 각종 장애인 정책에 장애 여성에 관한 별도의 주목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자립생활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 복지의 한 모형이자 권리회복의 중요한 차원이다. 금번조항은 여성 조항과 더불어 한국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별도의 조항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그 초기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용어 사용에 있어 실무그룹 초기부터 논쟁의 불씨를 갖고 있었다. 즉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 지체장애인 엘리트 중심으로 주도된 장애 운동의 한 모델이며 이의 보편화는 장애유형의 특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감각장애 유형으로 부터의 강한 저항은 그동안 자립생활이 얼마나 지체장애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서비스와 정책 역시 편중적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결국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 항목을 포함하게 되기는 했으나 자립이 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정 모형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모형을 확인 하는 선에서 채택에 합의가 도출되었다. 금번 조항의 내용이 자립생활을 대변하고 있으면서도 그 제목이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대신 자립적 생활(Living Independently 로 표현된 것은 이러한 갈등의 흔적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하겠다.

자립생활이 반영하고자 하는 기본철학은 자율성(autonomy)과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개념들이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회복에 있어 준거틀을 형성하는 핵심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이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숙지여부는 장애인의 생활시설로 부터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금번협약의 채택 이후 당사국들의 정책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철학을 자국 내의 장애 정책에 반영하면서 시설 정책의 최소화로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자립(independence)에 대한 해석이다. 일부 당사국들은 자립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지역사회에서 확대 가족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해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은 어떤 곳이든, 누구하고든 선택하여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적시함이 정당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있

는 점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에서 자립생활이 주목 받고 있으며 동시에 활동보조 서비스에 관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는 세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법적 개정으로의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구분되어야 할 점은 자립생활과 같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사회의 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활동보조 서비스는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 수단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자립생활이라는 인권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지만,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자립적 생활이라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요한 수단이기이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접근권과 이동권

본 조항에서 언급하는 접근권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즉, 대중교통,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에 접근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

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을 비롯하여 끊임 없이 증가하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며 지원과 보조를 촉진하는 방안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접근권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이어 또 하나의 고유한 장애관련 조항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조항들이 기존의 보편적인 권리를 장애인에게 확대하여 적용시키고 있는 반면 접근권은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중요한 점은 접근권이 사회권에 해당하느냐이다. 만일 사회권인 경우 접근권은 점진적 실현의 대상으로서 즉각적인 조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접근권의 불허를 차별로 보는 경우 사회권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IDC도 서비스와 시설/설비가 접근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동권은 한국이 제안한 또 하나의 별도 조항으로서 실무그룹 초기부터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었다. 이동권이라 함은 장애인이 환경에 접근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환경이 접근가능하다는 것과 장애인이 이동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동은 개인적인 것이고 접근은 환경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의 측면을 다룬 접근성은 9조에서 다루고 개인의 이동권은 20조에서 각각 별도로 다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권과 이동권이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이들을 한 조항으로 합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국가들이 있어 많은 논쟁을 가진 바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20조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고 있다. 이들 중 현장지원, 혹은 동반지원(Live Assistance)은 장애인의 이동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수단 들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이동권에 관련된 조치들이 지체 장애인을 위한 내용으로 편향된 바 있으나 이러한 동반지원이 언급됨으로써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이동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표준규칙(Standard Rules)에서는 logistics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그 현장에서 즉시 동반지원하는 인적지원을 함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최종 안의 동반지원은 인적지원을 포함한 각종 동물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인적지원에 더하여 안내견 및 기타 동물지원이 포함되는 광의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결론: 국내 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하고도 의미 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한국은 본 협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인권 후발국 답지 않게 성숙하고 능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존의 7대 국제 인권 조약 제정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이 보여준 능동적인 자세는 인권 역사의 발전을 앞당기는 우수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한국은 3개의 별도 조항 설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중요한 개념의 협약 내 반영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사에 기리 남을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즉, 6조의 장애 여성, 19조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통합, 그리고 20조 개인 이동 등 3개 조항은 어려운 합의 과정과 절충 과정을 거친 끝에 한국의 의견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조항이다.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반영하는 4조 3항의 설치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만큼 향후 한국의 대응과 책임 역시 의미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의 표현이 자국 내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언행일치의 덕목이 구현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 그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가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살펴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인간으로 보장되는 확고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평범하면서도 절박한 인권과 사회정의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됨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 규범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회 활동과 개인 활동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 받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의 인권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재구성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평등한 인권을 위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노력 역시 필수적 조건이 될 것이며 그 노력들은 평등한 인권이라는 기준에서 보다 엄중하게 평가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한국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의 영향을 줌과 동시에 한국 장애인 관련 법의 정비와 제도 개선 및 환경 변화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면 한국 장애인 관련 법등이 이에 따라 개정되고 보완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과 교통 및 정보 등 각종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는 변화도 나타나리라고 예상된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법이 있었음에도 제도와 관행이 이에 따라 집행되지 못했던 상황 등

도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 신장은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변화로만 달성될 수 없다. 범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식 속에서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장애인권리협약은 한국 사회에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호소와 올바른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장애인 한 개인으로서의 대변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이 보다 권위있는 인권 조약을 통해 알려지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로 부터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인식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 정의의 관점을 통해 범 사회에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하겠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등한 인격체로 지역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진정한 인권 실현의 목적이기에 사회 인식 개선은 장애인 인권에 있어 필수적 조건인 것이다.

무엇 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실천은 우리나라 장애계로 하여금 세계로 열려 있는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의 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의 사례를 국내에 반영하는 개발형 장애인 복지에만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선진국으로 부터 많은 협력을 얻었고 때로는 지원도 받았다. 그런 반면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장애 문제에 대한 지원

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는 전 세계에 걸친 보편적 현상이며 공동의 노력이 그 어느 영역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세계의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단지 일방적인 지원의 차원을 넘는 비전 실현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자기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손실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세계 시민 의식의 실현인 것이다.

미래를 향한 장애인복지의 진정한 고민은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에 있기 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의 실현과 도전의 꿈에 있다고 믿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나온 지난 4반세기가 원대한 비전을 꿈꾼 위대한 선각자들에 의한 결실이라면 향후 새로운 4반세기는 누구의 비전에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단 기간 내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 바탕 위에서 장애계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성과도 거두게 되었음이 사실이다. 지구촌 곳곳에는 경제 대국이나 전통적 선진국 보다 이러한 모범적 사례를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많은 나라가 있으며 한국 장애계의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기대된다고 하겠다. 과연 우리 한국 장애계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비전을 세우고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세계 역사 창조의 사명을 짊어질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한국은 기타 개발 도상국들에게 적절하고도 의미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인식하고 국제 장애인 인권 기금을 조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전통적 자금 지원 선진국들과도 다르고 이념 주도의 국가들과도 달리 자국 내에서의 자생적인 노력을 전달할 수 있는 비교적 무난한 나라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할 의무도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 장애인 단체가 합심하여 기금 재

단 설립을 발의하고 조성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이 재단은 한국이 주도했던 장애 여성 조항과 자립생활 그리고 이동권 등의 지구촌 실현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선도해 나감으로써 뿌린 씨앗을 거두는 성숙한 국제 사회의 리더쉽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